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 증진 및 진흥 추가〉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14호)
-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00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조계원의원안

가. 제 안 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9. 11.

다. 회 부 일 : 2025. 9. 12.

2. 김교홍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교홍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9. 23.

다. 회 부 일 : 2025.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조계원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이 중요함에도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 목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2. 김교홍의원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부 또는 모금의 방식으로 재원(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를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의 증진 등 일정한 경우에만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사무로 체육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포함함으로써,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 증진 및 진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illegible]

현행	조계원의원안	김교홍의원안
야 한다.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지역 주민의 <u>문화</u> <u>· 예술 · 보건</u> 등의 증진	2. ----- <u>문화</u> <u>· 예술 · 보건 · 체</u> <u>육 활동</u> ----	2. ----- ----- <u>증진 및 체육 진흥</u>
3. 4. (생 략)	3. 4. (현행과 같음)	3.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 음)	③ ~ ⑤ (현행과 같 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을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법」¹⁾과 「국민체육진흥법」²⁾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지원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지역 체육 분야에도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³⁾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정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3)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스포츠 재원에도 활용해야”, 데일리안, 2024.7.6.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80436/>

이에, 각 개정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 및 진흥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체계상 이미 관련 사업의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제도의 명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발의된 두 개정안에서는 각각 “체육 활동 증진(조계원 의원안)”과 “체육 진흥(김교홍 의원안)”이라는 상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적 정합성과 체계성을 고려한 조문 정비가 필요함.

《 개정안 조문 비교 》

현 행	조계원 의원안	김교홍 의원안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체육 활동 등의 증진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및 체육 진흥

사전적 의미로, ‘증진(增進)’은 “점점 더 늘어나고 좋아진다”⁴⁾는 뜻으로, 현행법에서는 문화 증진, 예술 증진, 보건 증진 등 각 분야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진흥(振興)’은 “떨쳐 일으켜 발전시킨다”⁵⁾는 의미로, 특정 분야의 정책적 지원과 육성을 강조하는 용어임.

따라서 ‘체육’만을 별도로 ‘진흥’으로 규정할 경우, 문화·예술·보건과 달리 체육 분야에만 정책적 지원과 육성의 의미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4) 증진(增進): 기운이나 세력 따위가 점점 더 늘어 가고 나아감. (용례: 건강 증진, 복리 증진, 식욕 증진)

5) 진흥(振興): 떨쳐 일어남. 또는 떨쳐 일으킴. (용례: 문예 진흥, 진흥 사업, 산업 진흥)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해석될 수 있어, 각 분야를 균형 있게 나열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육
역시 ‘증진’으로 규정하여, 문화·예술·보건 분야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행정안전부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고향사랑기금을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경우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